

건강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대경대학교 부설 건강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건강과학분야를 연구하여 학교발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연구소는 대경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천연소재 항균활성물질 연구
2. 항균제품 개발
3. 건강식품 개발
4.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7.1.>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사무직원과 조교) ① 연구소에 사무직원과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직원과 조교는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직원과 조교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삭제 <2013.7.1.>

제8조 삭제 <2013.7.1.>

제9조 삭제 <2013.7.1.>

제10조(예산 및 회계) 연구소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규정을 준용하고 산학협력단 예산에 포함시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7.1.>

제11조 삭제 <2013.7.1.>

제12조 삭제 <2013.7.1.>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